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1조(담보증권의 제공) ① (생략)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다음 각 목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</p> <p>가. 예금보험공사</p> <p>나. 중소기업진흥공단</p> <p>다. 한국가스공사</p> <p>라. 한국도로공사</p> <p>마. 한국수자원공사</p> <p>바. 한국전력공사</p> <p>사. 한국철도공사</p> <p>아. 한국철도시설공단</p> <p>자. 한국토지주택공사</p> <p>8. 다음 각 목의 채권</p> <p>가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</p> <p>나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</p> <p>다. 「은행법」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</p> <p>9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증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2025년 1월 31일까지는 &lt;별표&gt;의 비율에 따른 담보증권 금액을 제공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③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·제2호의 담보증권은 제1그룹으로, 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담보증권 중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1그룹으로 관리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제21조(담보증권의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국가철도공단</p> <p>나. 예금보험공사</p> <p>다. 중소기업진흥공단</p> <p>라. 한국가스공사</p> <p>마. 한국도로공사</p> <p>바. 한국수자원공사</p> <p>사. 한국전력공사</p> <p>아. 한국철도공사</p> <p>자. 한국토지주택공사</p> <p>8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증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2025년 4월 30일까지는 &lt;별표&gt;의 비율에 따른 담보증권 금액을 제공한다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적격담보증권을 한시적으로 확대 인정</p> <p>-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이 「국가철도공단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반영</p> <p>- &lt;별표&gt; 적용기간 변경</p> <p>- 신규 적격담보증권을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&lt;별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기간별 담보증권 제공비율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4 873 1190 1304"> <thead> <tr> <th>적용 기간</th> <th>담보증권 제공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2020년 4월 10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</td> <td>50%</td> </tr> <tr> <td>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</td> <td>80%</td> </tr> <tr> <td>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</td> <td>9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적용 기간	담보증권 제공비율	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	70%	2020년 4월 10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	50%	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	70%	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	80%	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	90%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 &lt;2022. 10. .&gt;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(유효기간)</u>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>&lt;별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기간별 담보증권 제공비율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323 873 2228 1157"> <thead> <tr> <th>적용 기간</th> <th>담보증권 제공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</td> <td>80%</td> </tr> <tr> <td>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</td> <td>9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적용 기간	담보증권 제공비율	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	70%	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	80%	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	9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칙 신설</li> <li>- 시행일자 명시</li> <li>- 일부 적격담보증권의 유효기간 재설정</li>   <li>-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조정</li> </ul>
적용 기간	담보증권 제공비율																					
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	70%																					
2020년 4월 10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	50%																					
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	70%																					
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	80%																					
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	90%																					
적용 기간	담보증권 제공비율																					
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	70%																					
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	80%																					
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	90%																					